

의안번호	2216554
의 퇴 인	안호영 의원
회 답 일	2026. 3. 9.
추계번호	26A0763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6조 (계정의 구분)	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‘강원특별자치도계정’과 ‘전북특별자치도계정’을 추가	의무규정
2	안 제80조의2 (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	- 세입 -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- 회계내 타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- 일시차입금 -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-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- 세출 -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출연·보조, 융자 -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- 회계내 타 계정으로의 전출금 - 그 외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	의무규정
3	안 제80조의3 (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	- 세입 -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- 회계내 타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- 일시차입금 -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-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- 세출 -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출연·보조, 융자 -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- 회계내 타 계정으로의 전출금 - 그 외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76조 (계정의 구분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0조의2 (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	
3	안 제80조의3 (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고 동 계정의 세입·세출을 규정하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을 신설하고,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 사업으로 출연·보조, 융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 -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되며, 개정안에 따라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계정을 신설하는 것은 회계 운용규모 내에서 계정간 변동만 발생하므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
 - 다만,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계정의 세출 사업으로 출연·보조, 융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계정을 통한 세출 사업의 종류·내용, 사업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 추가 재정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